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48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9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10월 16일, 봉양순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일자: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봉양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예기치 못한 폭염, 수해,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하여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장만이 아니라,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까지 필요한 상황임.
- 따라서 관련 시책 수립·계획 시행·사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본이념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2조제10호).
- 에너지계획에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8조제2항제4호).
-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10조제1항제7호).
- 포상 대상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5조제2항).
- 에너지복지 사업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
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7조제1항제4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에너지법」,

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복지 관련 기본이념, 계획수립 및 시책 추진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조제10호는 에너지 시책 수립에 관한 기본이념에 ‘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’을 추가하는 것이고, 안 제8조제4호와 안 제10조제7호는 서울시 에너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과 에너지정책위원회 자문 사항에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임.

안 제25조제2항은 에너지복지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, 안 제27조제4호는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 범위에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며, 안 제29조는 에너지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규정을 규정하는 것임.

본 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,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

제3조제1항제8호 중 “생존”을 “일상생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4호 중 “지원”을 “지원 등 에너지복지 추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

제25조제2항 중 “감축”을 “감축, 에너지복지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

제29조제1항 중 “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”을 “확대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발·이용·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”을 “개발·이용·보급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

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“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로, “기후변화기금”을 “기후대응기금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본이념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기본이념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10.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실현</u>
제3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략) 8. “에너지복지”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<u>생존</u> 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. 9. ~ 11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----- <u>일상생활</u> ----- ----- -----. 9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에너지계획) ① (생략)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에너지취약계층 <u>지원</u> 에 관한 사항 5. ~ 8. (생략) ③ (생략)	제8조(에너지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지원 등 에너지복지추진</u>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,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⑥ (생략)

제25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,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0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에너지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에너지 교육, 홍보 및 포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감축, 에너지
복지 -----
-----.

제27조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에너지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
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
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 ①

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 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 등의 개발·이용·보급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확대를 위하여 시민·사업자·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·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~ ⑥ (생략)

⑦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·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⑧ (생략)

제29조(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) ①

----- 확대,
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
지를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개발·이용·보급,
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복
지 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 「서울특
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
에 관한 조례」 --- 기후대응기금 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